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성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심층·신속평가 대상 사업·판단기준·절차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재협의 대상 명확화, 약식평가 절차 합리화, 미등록 기술자 교육 의무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 대상 및 기준 마련(안 제67조의2, 제67조의4, 별표 4의2, 별표 4의3 신설)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대상을 규정하고 심층 또는 신속평가 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환경영향 검토기준을 정함

나. 심층평가의 공청회 개최 등 절차 마련(안 제67조의3 신설)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절차 및 방법,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다. 신속평가의 결정 절차(안 제67조의5 신설)

신속평가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라.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안 제67조의5 신설)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신속평가 대상사업이 사업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규정함

마.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위임(안 제77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신속평가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위임

바. 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및 명확화(안 제10조의2)

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를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협의요청을 동시 진행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명확히 명시함

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시 변경·재협의 근거 명확화(안 별표 2)

전략·환경·소규모 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에는 새로운 전략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 변경시 전략평가 변경·재협의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아.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교육 강화(안 별표 5의3)

평가업에 미등록된 기술자도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등록자와 동일하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

자. 과태료 대상 위반행위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0)

법률에서 규정한 신속평가 절차 등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제5호”를 “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전단 중 “법 제13조”를 “법 제12조제2항,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각각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를 각각 제67조의6부터 제67조의9까지로 하고, 제5장에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심층평가의 대상 검토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란 별표 4의2와 같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4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67조의3(심층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③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
2.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 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④ 사업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7조의4(신속평가의 대상 검토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

가. 별표 4의2의 심층평가 대상사업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다.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환경
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
향 및 보전방안 등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해야 하는
개발사업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해야 하는 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이란 각각 별표 4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67조의5(신속평가의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
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
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
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2.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면 환경영향평
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사업자에게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및 대상지역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⑤ 법 제52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데 걸린 기간

2. 공휴일 및 토요일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법 제52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67조의5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의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의5제1항제1호의 신속평가 대상사업

- 가.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제5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증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
- 라. 제55조제2항제5호에 따른 면적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마. 제5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배출량 미만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되거나 신규 배출되는 경우

2. 제67조의5제1항제2호의 신속평가 대상사업

- 가.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규모 미만으로 증가되는 경우
- 나.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면적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77조제1항제18호고목부터 도목까지를 각각 보목부터 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고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의 결정
- 노.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 도.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 요청의 접수
- 로.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의 결정 및 결과의 통보
- 모.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른 의견 제출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 라목, 마목 및 사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가.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주거, 산업용지 조성 등 구체적인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별표 2의 계획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 또는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

별표 4의2를 별표 4의4로 하고,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4(중전의 별표 4의2) 제목 중 “(제67조의3제3항 관련)”을 “(제67조의7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가목의 시기란 중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대상란 중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를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된 자로서”로 하며, 같은 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된 자 중 그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고용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고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5조제2항”을 “법 제35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35조제3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6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6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36조제2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37조제1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제2항

(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0조제1항”을 “법 제40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0조제4항”을 “법 제40조제4항(법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된 자로서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가 아닌 자는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2028년 10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 라목, 마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계획으로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이 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의2]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제67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1. 도시의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운하에 관한 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에너지 개발사업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사업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다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 다만,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로서 화력 및 원자력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다만, 열발생설비 중 터빈·발전기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4. 수자원의 개발사업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7.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의 설치공사
8.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가) $\frac{\text{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시설의 조성면적}}{30\text{만제곱미터}} + \frac{\text{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조성면적}}{5\text{만제곱미터}}$ 나) $\frac{\text{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용적}}{330\text{만제곱미터}} + \frac{\text{지정폐기물 매립용적}}{25\text{만제곱미터}}$ 4)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라목에 따른 시멘트 소성로[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로서 그 처리용량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4의3]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검토 기준(제67조의2제2항 관련)

1.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검토를 위한 영향인자

가. 자연환경 영향인자

- 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보호구역
-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 4)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5)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 6)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7)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서식지역 해당 여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 판단한다.)
- 10)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
- 1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1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 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 1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
- 1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 15)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 16)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 1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변구역
 - 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생활환경 영향인자

1)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마)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유해물질 배출시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심층평가 대상 검토 기준

가.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제1호가목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제1호나목1)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이 있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에 제1호나목2)의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신속평가 대상 검토 기준

가. 법 제52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에 제1호가목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지 않을 것

2) 토석·모래·자갈·광물 등 채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생태계 및 지형 훼손을 유발하는 사업이 아닐 것

나. 법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 제1호나목1)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이 없을 것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에 제1호나목2)의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이미 협의받은 사업지역 또는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3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 경우 협의는 법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말한다)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환경영향평가협회의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협회의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6호--		
1. 삭 제		-----		
1의2. ~ 3. (생 략)		-----		
제10조의2(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 ①·② (생 략)		1의2. ~ 3. (현행과 같음)		
③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의견 수렴과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본다.		제10조의2(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법 제12조		
		제2항, 제13조 -----		

		----- “약식전략		
		환경영향평가”로,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서”는 각각 “약식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제67조의2(심층평가의 대상 검토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신 설>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
향평가 대상사업”이란 별표 4의
2와 같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4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67조의3(심층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공청회가 주민 등
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
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③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
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신 설>

공청회 개최

2.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④ 사업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7조의4(신속평가의 대상 검토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

가. 별표 4의2의 심층평가 대상사업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23조에 따른 기후
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
는 개발사업

다. 「환경보건법」 제13조제1
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
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28
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
안 등을 환경영향평가 협
의 내용에 포함해야 하는
개발사업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
업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
28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
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해야 하는 개발사업이 아
닌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

② 법 제5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4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 설>

제67조의5(신속평가의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 제2항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 준비서

2.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전단에 따른 기

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사업자에게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및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⑤ 법 제52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데 걸린 기간

2. 공휴일 및 토요일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

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법 제52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67조의5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의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의5제1항제1호의 신속평가 대상사업

가.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5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증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

	<u>는 경우</u> <u>라. 제55조제2항제5호에 따른</u> <u>면적 미만에 해당하는 토</u> <u>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u> <u>우</u> <u>마. 제55조제2항제7호에 따른</u> <u>배출량 미만으로 오염물질</u> <u>배출량이 증가되거나 신규</u> <u>배출되는 경우</u> <u>2. 제67조의5제1항제2호의 신속</u> <u>평가 대상사업</u> <u>가.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u> <u>따른 사업규모 미만으로</u> <u>증가되는 경우</u> <u>나.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u> <u>따른 면적 미만에 해당하</u> <u>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u> <u>는 경우</u>
<u>제67조의2 (생 략)</u>	<u>제67조의6 (현행 제67조의2와 같</u> <u>음)</u>
<u>제67조의3(사업수행능력 평가의</u> <u>대상·기준) ①·② (생 략)</u>	<u>제67조의7(사업수행능력 평가의</u> <u>대상·기준) ①·② (현행과 같</u> <u>음)</u>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u>별표 4</u> <u>의2와 같다.</u>	③ ----- ----- <u>별표 4</u> <u>의4-----.</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고. ~ 도. (생 략)</u> <u>② ~ ⑨ (생 략)</u>	<u>른 심층평가 대상의 결정</u> <u>노.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u> <u>른 의견 제출</u> <u>도.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u> <u>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 요</u> <u>청의 접수</u> <u>로.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u> <u>른 신속평가 대상의 결정</u> <u>및 결과의 통보</u> <u>모.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u> <u>른 의견 제출</u> <u>보. ~ 오. (현행 고목부터 도</u> <u>목까지와 같음)</u> <u>② ~ ⑨ (현행과 같음)</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281